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4월 22일, 이주웅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04월 22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주웅 의원)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나.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상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규정(안 제3조)
- 다. 지급결정에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및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규정 (안 제6조)
- 라. 국가나 강원도의 지원과 관련한 공제 지급 규정(안 제7조)
- 마.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상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안 제6조에서는 지급결정에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및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안 제7조에서는 국가나 강원도의 지원과 관련한 공제 지급

안 제8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함을 정하였습니다.

○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는 가운데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20년 3월 13일 전북 전주시의 선별적 지급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으며,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 시도별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지원명칭	지원대상	지원액수	지급방법
서울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100%이하	가구당30-5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경기	재난기본소득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2가지 방식
	재난긴급생계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0만 가구	가구당50만원	
대구	재난긴급생계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4만가구	가구50만~90만원	선불카드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000가구	가구당50~80만원	선불카드 등
	저소득층생활비	기초수급자 등 34만 7000여 가구	가구마다 지원액수 다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중 택일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100%이하 30만 가구	20만~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강원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실직자등 30만명	40만원	선불카드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100%이하 17만 가구	가구30만~63만 3000원	지역화폐카드 「여민전」
세종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만 3000가구	-	시군별 자율시행
충남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충북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이하 23만 8000가구	가구 40만~60만원	현금
부산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등 18만 8000가구	1인당 100만원	선불카드
경남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30만~50만원	현금
전북	긴급지원금	학원등 시설 1만 3064곳	시설당 7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광주	3대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이하 등	30만~100만원	광주상생카드
전남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	가구 30만~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울산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이하 23만 2000명	1인당 10만원	울산페이, 지역은행 체크카드 중 택일

○ 재난기본소득관련 전국적 입법례를 보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20여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선군은 지난 7일 임시회에서 관련조례안이 의결 된 바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조례에서 지역화폐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평창군은 지역화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 정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부칙에서 특례를 만들어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을 지급함을 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하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부.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평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결정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창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군수는 평창군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 유가 증권,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